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고 등 교 육 기 관 의 평 가 · 인 증 등 에
관 한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000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의2 및 법제처 훈령·예규 등 정비 계획에 따라 인허가 요건 진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교육부 고시 제2021-2호)」에 규정된 예비인정 제도를 대통령령에 상향 입법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현행 조문에 따르면 신설되는 의학·치의학·한의학·약학 교육과정의 경우 최초 입학 시점에는 평가·인증의 획득이 불가능하여 최초 입학생이 의료인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학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학과의 경우 교육과정 개설 이전이라도 평가·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기존 제2조의2 제3항과 제4항에서 지칭하고 있는 “제6조제1항의 제4호”가 평가기준에 대한 내용이어서 실제로는 “제5호”로 지칭되어야 하고, “제6조제1항의 제5호”가 평가·인증의 방법·절차 및 유효기간에 대한 내용이어서 실제로는 “제6호”로 지칭되어야 함에도 잘못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는 한편, 법 제11조의 2에서 인정기관의 평가 또는 인증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음에도, 현행 대통령령에서는 평가의 방식, 절차, 인증의 유형과 유효기간 등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었으므로, 이를 인정기관이 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법령에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신설되는 의학·치의학·한의학·약학 교육과정의 경우 교육과정 개설 이전이라도 평가·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조의2 제3항 신설)
- 학교 평가·인증 또는 자문활동 등을 한 실적이 없는 경우 예비 인정기관으로 지정하는 근거 조항을 상향 입법
(안 제5조 제1항 단서 신설)
- 기존 제2조의2 제3항과 제4항에서 지칭하고 있는 제6조제1항의 “제4호”와 “제5호”를 각각 “제5호”와 “제6호”로 바로잡고 인정기관이 평가와 인증에 대해 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법령에 마련
(안 제2조의2 제4항 및 제5항 개정, 안 제6조 제1항 제6호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인정기관은 평가·인증의 방법과 절차, 평가기준, 인증의 유형 및 유효기간을 해당 인정기관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6조제1항제5호”를 “제6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최초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의 학사일정을 개시하기 1년 6개월 전부터 법 제1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평가·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를 제외한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예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방법·절차”를 “방법·절차, 인증의 유형”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평가·인증의 실시) ①·② (생 략)	제2조(평가·인증의 실시)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③ 인정기관은 평가·인증의 방법과 절차, 평가기준, 인증의 유형 및 유효기간을 해당 인정기관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u>
제2조의2(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절차) ①·② (생 략)	제2조의2(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최초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의 학사일정을 개시하기 1년 6개월 전부터 법 제1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평가·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한다.</u>
③ 인증을 받은 의료과정운영학교는 <u>제6조제1항제5호</u> 에 따른 평가·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년 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하는 신청기간 내에	④ ----- -- <u>제6조제1항제6호</u> ----- ----- ----- -----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인정기관은 의료과정운영학교가 보유한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준·방법·절차 등에 따라 평가를 완료하고 인증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5조(인정기관의 지정기준) ①

인정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신설>

1. ~ 4. (생략)

② (생략)

제6조(인정기관의 지정) ①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정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평가·인증의 방법·절차 및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

⑤ 제4항-----

-----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5조(인정기관의 지정기준) ①

----- 다만, 제3호를 제외한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예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인정기관의 지정)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 방법·절차, 인증의 유형 -----

7.·8. (생 략) ② ~ ⑤ (생 략)	7.·8.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	
연 락 처	(044) 203 - 6914